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6. 30 | 통권 제23호(2012-11)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요약]

- 2004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체불임금 현황을 비교하면, 체불발생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체불근로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고, 체불금액은 소폭 증가하였음. 2011년 현재 체불발생 193,536건, 체불근로자 278,494명, 체불금액 10,874억 원을 기록함.
- 임금체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체불근로자들은 현재 취업해 있는 경우보다 실업상태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체불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약 3분의 2의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고용노동청 진정/고소를 통한 형사상 절차와 법원을 통한 민사상 절차의 차이점을 모르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임금체불의 원인을 '회사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사업주는 금융지원,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가장 원하고 있음.
- 앞으로 체불임금 관련정책은 처벌 위주, 일회적 해소정책에서 사전적이며 지속적인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절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창업컨설팅시장 활성화를 통한 무리한 창업방지 정책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부분이 실업상태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유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사업을 지속하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체불임금 발생 현황

- 2011년 현재 체불임금액은 약 1조 9백억 원, 체불근로자 수는 약 28만여 명을 기록함.
 - 1인 이상 사업체의 체불임금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의 체불임금 통계를 보면, 2011년 현재 체불발생 193,536건, 체불근로자 278,494명, 체불금액 10,874억 원을 기록함.
 - 2004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체불임금 현황을 비교하면, 체불발생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체불근로자 수

는 소폭 감소하였고, 체불금액은 소폭 증가하였음.

- 체불발생건수(신고건수)가 증가한 데 비해 체불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되는 체불임금이 집단적 접수에서 점차 개인적·개별적 접수로 변화한 것을 그 이유로 볼 수 있음.
- 2011년 현재 체불임금 처리유형은 금액기준으로 볼 때 '지도해결'이 56.1%, '사법처리'가 38.6%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지도해결'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법처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명, 억 원, %)

연도	총발생		청산		미청산			청산율 (B/A)
	업체 (근로자 수)	금액(A)	업체 (근로자 수)	금액(B)	업체	근로자 수	금액	
2004	100,607 (301,032)	10,426	68,116 (182,816)	7,221	32,491	118,216	3,205	69.3
2005	101,101 (292,329)	10,291	74,107 (233,190)	7,660	26,994	59,139	2,631	74.4
연도	신고건수 (근로자 수)	금액	지도해결		사법처리		처리중	
			건수 (근로자 수)	금액	건수 (근로자 수)	금액	건수 (근로자 수)	금액
2006	127,626 (277,355)	10,297	81,296 (128,900)	3,614 (35.1)	39,957 (135,757)	6,159 (59.8)	6,373 (12,698)	524 (5.1)
2007	151,802 (194,831)	8,403	90,831 (106,446)	3,627 (43.2)	55,531 (81,326)	4,480 (53.3)	5,440 (7,059)	296 (3.5)
2008	169,490 (249,485)	9,561	109,746 (155,391)	5,171 (54.1)	52,856 (84,260)	3,945 (41.3)	6,888 (9,834)	445 (4.6)
2009	187,799 (300,651)	13,438	118,670 (183,987)	7,784 (57.9)	63,005 (107,942)	5,243 (39.0)	6,124 (8,722)	411 (3.1)
2010	186,373 (276,417)	11,630	121,673 (174,353)	6,037 (51.9)	57,830 (91,969)	5,090 (43.8)	6,870 (10,095)	503 (4.3)
2011	193,536 (278,494)	10,874	135,366 (188,098)	6,105 (56.1)	52,049 (80,585)	4,195 (38.6)	6,121 (9,811)	574 (5.3)

주: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청산, 미청산, 청산율의 개념 대신 지도해결, 사법처리, 처리중으로 구분함. 자료: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자, 소규모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함.
 - 체불근로자들의 업종별 분포는 응답자 921명 중 제조업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20.0%), 음식숙박업(8.4%), 도소매업(7.2%)의 순으로 나타남.
 - 체불근로자들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17.6%), 사무종사자(16.2%)의 순으로 나타남.
- 1~9인 및 10~49인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근로자의 다수(76.0%)가 근로하고 있음.
- 재직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음.
 - 체불근로자들은 현재 취업해 있는 경우(44.1%)보다 실업상태인 경우(54.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짐작됨.
 - 체불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약 3분의 2의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함.
 - 체불된 임금종류는 기본급과 퇴직금

〈표 2〉 체불근로자들의 현재 취업 여부 및 실업기간 : 근로자 응답

전체	예	아니오	무응답	실업 기간(100%)					
				1개월 미만	1~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무응답
921명 (100%)	44.1%	54.7%	1.2%	22.6%	30.6%	1.0%	0.4%	0.2%	45.2%

〈표 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근로자 응답

전체	예	아니오	무응답
921명 (100%)	38.3%	61.0%	0.7%

〈표 4〉 체불된 임금 종류(중복응답) : 근로자 응답

전체	기본급	연장/휴일/야간 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 수당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수당	주휴수당	기타	무응답
921명	69.6%	11.9%	31.7%	6.2%	3.0%	2.7%	1.7%	1.3%	2.1%	2.2%	3.4%

〈표 5〉 체불된 금액 : 근로자 응답

전체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무응답	평균
921명 (100%)	18.3%	21.6%	13.6%	16.6%	23.8%	6.1%	398.8만 원

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체불된 금액은 5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만~200만 원, 100만 원 미만의 순이었으나 특정 금액 구간에 집중적으로 체불액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함.

-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 ‘회사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2.9%로 나타났으며, 사업주가 ‘떼어 먹으려고’라고 응답한 경우는 21.6%,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는 10.4%로 나타나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6〉 임금체불 주요 원인 : 근로자 응답

전 체	921명(100%)
떼어 먹으려고	21.6%
회사가 어려워서	42.9%
약정한 근로조건이 회사와 해석이 다름	7.2%
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되어서	6.1%
회사가 노동법을 잘 몰라서	4.2%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10.4%
기타	2.7%
모름	0.9%
수금 안 됨	0.5%
무응답	3.5%

■ 형사상 해결절차와 민사상 해결절차의 차이점을 모르는 근로자가 다수임.

- 고용노동청 진정/고소를 통한 형사상 절차와 법원을 통한 민사상 절차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체불근로자들은 ‘알고 있다’(40.5%)보다 ‘모르고 있다’(56.1%)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남.

〈표 7〉 고용노동청의 형사상 절차와 법원을 통한 민사상 절차의 차이점 인지 여부 : 근로자 응답

전 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기타	무응답
921명 (100%)	40.5%	56.1%	0.4%	2.9%

■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고충인 것으로 드러남.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가장 고충을 느끼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23.9%), ‘신속한 일 처리’(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 고충을 느끼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점 : 근로자 응답

전 체	339명(100%)
경제적 어려움	27.4%
신속한 일처리	16.5%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	23.9%
사업주 의식전환	4.7%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함	1.5%
임금 제때 지급	5.6%
정부지원 및 정부에서 즉시처리	4.1%
노동부 사업장 관리 강화	0.9%
기타	15.3%



체불사업주 실태조사 결과

- 사업장 설립시기가 5년 이내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집중되어 발생함.
 - 체불사업주들에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의 설립연도를 질문한 결과 5년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5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의 설립연도 : 사업주 응답

전 체	1980년 이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05년	2006~2011년
516명 (100%)	1.4%	3.5%	11.2%	32.0%	51.9%

- 임금체불은 대부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함.
 - 체불사업장의 현재 운영 여부를 질문한 결과 운영 중이라고 답한 사업장은 86.6%,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은 12.8%로 나타나 체불임금의 대부분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도산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체불근로자 구제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휴폐업한 경우 그 기간은 3~6개월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개월 이하로 나타남.

〈표 10〉 현재 회사 운영 및 휴폐업 기간 : 사업주 응답

전 체		516명 (100%)
예		86.6%
아니오		12.8%
무응답		0.6%
휴폐업 기간 (100%)	1개월 이하	25.0%
	2~3개월 미만	19.4%
	3~6개월 미만	33.3%
	6개월~1년 미만	16.7%
	1년 이상	5.6%

-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영상태는 적자인 경우가 많음.
 - 체불사업장의 경영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적자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적자'라고 대답한 비중이 64.1%로 '적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31.6%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표 11〉 금년 재정상태(적자여부) : 사업주 응답

전 체	516명 (100%)
예	64.1%
아니오	31.6%
기타	0.6%
폐업	1.6%
모름	0.4%
무응답	1.7%

- 경영상황 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임.
 - 사업주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은 '회사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64.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같은 답변보다 다소 높은 수치임.

- 다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와의 해석 차이’가 14.1%, ‘근로자와의 다툼’이 13.0%로 나타났으며 ‘회사가 노동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은 4.3%로 미미하게 나타남.

〈표 12〉 임금체불 주요 원인 : 사업주 응답

전 체	516명(100%)
회사가 어려워서	64.3%
약정한 근로조건이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해석이나 입장이 다름	14.1%
회사가 노동법을 잘 몰라서	4.3%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13.0%
원청사의 잔금 미지급	1.6%
기타	1.4%
무응답	1.4%

- 사업주들은 정부의 공정한 사건처리를 희망함.
 -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로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점이나 체불임금 처리과정의 개선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입장에서 사건처리를 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23.6%로 가장 많았으며, ‘체불액과 사용자로서의 피해액에 대한 상계처리 요망’이 14.8%, ‘유예기간 부여’와 ‘근로자와 합의조정’의 응답이 각각 4.9%로 나타남.

〈표 13〉 사용자로서 고통을 느끼는 점이나 처리과정의 개선점 : 사업주 응답

전 체	182명(100%)
근로자 입장에서 사건처리 지양	23.6%
근로자와 상계처리	14.8%
유예기간 부여	4.9%
근로자 의식개선	4.4%
근로자 처벌	2.2%
근로자와 합의조정	4.9%
기타	45.1%

- 체불사업주들은 금융지원을 가장 희망함.
 - 체불사업주들이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으로는 ‘금융지원’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자와 상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11.3%, ‘유예기간 부여’ 10.6%의 순으로 응답함.

〈표 14〉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 : 사업주 응답

전 체	160명(100%)
유예기간 부여	10.6%
금융지원	37.5%
노무지원	4.4%
사업주 보호(자활기회제공 및 처벌면제)	3.1%
근로자와 상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11.3%
기타	33.1%

시사점

- 체불임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현행 임금체불 해소정책은 임금체불 발생 후 체불금품을 처리하는 사후제도에 집중되어 임금체불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미비한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전지도가 요망됨.
 - 앞으로 체불임금 정책은 처벌 위주, 일회적 해소정책에서 사전적이며 지속적인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이 실업상태인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유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조사된 체불근로자들 중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의 대부분은 현재 운영 중인 비도산 사업장으로 나타나 도산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임금채
- 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사업을 지속하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 체불근로자와 사업주 공히 임금체불의 원인 중 '경영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와 같이 지급능력부족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인 해소가 어렵고 체불임금 변제까지의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가 커지게 됨.
 -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사업을 지속하여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절차 홍보가 필요함.
 - 임금이 체불될 경우 자기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이나 적절한 법률적 조치 등을 비롯한 체불임금 해결 절차에 대한 법률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 해소절차로서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 절차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해석차이로 인

한 체불임금 발생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절차에 대한 홍보를 통해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노사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사업장 방문, 유인물 등 안내자료 배포, 인터넷 등 온라인 광고, 사업주단체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창업컨설팅시장 활성화를 통한 무리한 창업방지 정책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무리한 창업이 경영악화 및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창업컨설팅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무리한 창업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창업자에 대해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적절한 사업폐지 시점과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임.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kangsb@kli.re.kr / 02-3775-5585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